

의안번호	제 1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9월 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연월일 : 2014년 9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일자리 창출 사업 (안 제5조)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 취업지원 사업 (안 제6조)
 -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등
-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7조)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관리 등 기능 수행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안 제8조)
 -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인증서 교부 및 「충청북도 기업 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

-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안 제9조)
 - 중앙행정기관, 시·군,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및 협약 체결 등
-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가능
-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11조)
 - 일자리 사업 수행·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 포상 (안 제12조)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등 포상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층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
3.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제 시행기준 등에 관하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제9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품질경영우수기업’ 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4. 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6. 기타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
- 취업상담·알선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2. 비용 발생 요인

-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위한 홍보비 및 인증서 제작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 ~ 제8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2030 잡 매칭 프로그램('07),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10)
대학-기업 멘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13)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행사 추진('10)
 - 직업상담사 인건비,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발굴단 운영
취업캠프, JOB콘서트, 구직자 교육, 만남의 날, 진로체험 등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10)
 - 기업체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인증서 제작 비용

나. 추계 결과 ('14 ~ '18) : 5,883,000천원(도비)

- 대학-기업 멘투멘 취업매직 프로젝트 : 1,918,000천원(도비)
-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 2,180,000천원(도비)
-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 510,000천원(도비)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1,250,000천원(도비)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 25,000천원(도비)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 매년 도비 확보하여 운영 중 ('14년 예산 기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3차년도 ('16년)	4차년도 ('17년)	5차년도 ('18년)	계
계	1,176,600	1,176,600	1,176,600	1,176,600	1,176,600	5,883,000
대학-기업 멘투멘 취업매직 프로젝트	383,600	383,600	383,600	383,600	383,600	1,918,000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436,000	436,000	436,000	436,000	436,000	2,180,000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일자리지원센터운영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